

## 증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[ 2005. 1. 14 ]

조례 제132호

일부개정 2016. 6. 10 조례 제679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75조에 따라 증평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 6. 10>

제2조(기능) 증평군 안전관리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 <개정 2016. 6. 10>

1. 안전관리계획,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
2. 건축물, 교량·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3.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
4.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
5.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
6.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

제3조(구성)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증평군에 거주하는 안전관리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. 다만,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건축·토목·전기·가스·기계·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
2. 건축·토목·전기·가스·기계·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(기술사,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)
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
4.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

람

[전문개정 2016. 6. 10]

제4조(위원의 임기) 단장, 부단장 및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6. 6. 10]

제4조의2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

[본조신설 2016. 6. 10]

제5조(단장과 부단장의 직무)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자문단의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 또는 단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·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자문단의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6. 6. 10]

제7조(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) ① 군수는 자문단에 자문 및 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·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〈개정 2016. 6. 10〉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6. 10>

제8조(의견청취) ① 자문단은 자문 또는 점검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6. 10>

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6. 10>

제9조 삭제 <2016. 6. 10>

제10조(결과보고) 자문단은 제2조의 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6. 10>

제11조(회의록 등)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·장소 및 안전, 출석위원, 자문내용과 그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6. 10>

제12조(간사와 서기)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. <개정 2016. 6. 10>

제13조(수당 등 지급)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, 안전점검·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6. 10>

제14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 6. 10 조례 제679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